

광주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가합5174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광식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C

변 론 종 결 2022. 10. 13.

판 결 선 고 2022. 12. 8.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687,923원 및 그중 382,037,224원에 대하여는 2021. 2. 9.부터 2021. 3. 31.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1,650,699원에 대하여는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20.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0. 29. 접수 제49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0. 10. 29. 접수 제29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83,687,923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9.부터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8%,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및 주문 제2, 3항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과 피고 B의 연대보증 등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D(이하 'D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6. 4. 28. 원고와 신용보증금액 416,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6. 4.
28.부터 2017. 4. 27.1) 까지로 정하여 다음과 같은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3조(보증료 등 납부) ③ 본인이 주채무 이행기간 내에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하여 보증료율에 연율 0.5%를 가산한 요율

을 곱하여 계산한 위약금을 납부하기로 합니다.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피고 회사,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피고 B, 이하 같다)은 신보(원고, 이하 같다)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신보가 사전구상을 행사하기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신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에게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폐업하였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4. E기관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 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지연보증료, 위약금

제16조(연대보증인) ① 연대보증인은 제10조에서 정하는 채무에 대하여 별도로 기재된 보증채무최고액에 따라 본인과 연대하여 채무이행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③ 연대보증인이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의 보증채

무최고액에도 불구하고 상환하기로 합니다.

1. 연대보증채무 이행의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보증채무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이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2. 연대보증채권의 집행보전(해지 포함),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위해 신보가 대신 지급한 비용
- 2)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D은행으로부터 5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 3) 한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원고가 정하는 율'은 2019. 4. 1.경 이후로 현재까지 연 8%이다.

나. 원고의 대위변제

- 1) D은행은 2021. 1. 8. 피고 회사의 '2021. 1. 5.자 거래정지'를 이유로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다.
- 2) 원고는 2021. 2. 9.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D은행에 피고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 합계 382,037,224원(= 원금 379,200,000원 + 이자 2,837,22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피고 B, C의 매매계약의 체결 등

피고 B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및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의 1/2 지분(이하 위 각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0. 10. 29. 매매(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피고 C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한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382,037,224원 및 채권집행보전비용 1,650,699원을 상환하여야 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도 위와 같은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687,923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382,037,22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1. 2. 9.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일인 2021. 3. 31.까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 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채권집행보전비용 1,650,69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최종 송달 다음 날인 2021. 4.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채권집행보전비용 1,650,699원에 대하여도 대위변제일인 2021. 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제1호에서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이행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채권집행보전비용은 보증채무이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집행보전비용에 대하여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만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위 범위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3. 사해행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① 피고 B, C는 2020. 10. 29.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고 B은 그 이전인 2016. 4. 28.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②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된 시점은 피고 회사의 보증사고 발생일로부터 불과 2개월 전으로서 당시 이미 피고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③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2개월 후인 2021. 1. 5. 피고 회사의 거래정지가 발생하였고, 2021. 1. 8. D은행은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 발생을 통지하였으며, 원고가 2021. 2. 9. 피고 회사의 D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적극재산은 ① 광주 남구 F아파트 G호 157,000,000원(2021. 9. 29. 기준 감정평가액), ②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18,000,000원(2020. 10. 29. 거래가액), ③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6,000,000원(2020. 10. 29. 거래가액), 합계 181,000,000원, 소극재산은 ① H은행 대출금채무 16,362,000원, ② I 대출금채무 38,724,000원, ③ J 대출금채무 18,397,000원, ④ K은행 대출채무 28,339,000원, ⑤ L 대출금채무 15,156,000원, ⑥ M조합 대출채무 3,000,000원, ⑦ D은행 보증채무 421,760,000원, 합계 541,738,000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이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수익자에게 책임재산인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로서, 이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체결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

갑 제2, 3, 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 체결 당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피고 B 역시 자신의 재산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가치를 지닌 주요재산에 해당하는 점, ③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거래정지가 발생하기 약 2개월 전에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B이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의사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해 피고 C는 2016. 4. 5.부터 2018. 4. 5.까지 피고 B에게 합계 30,250,000원을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로 피고 B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C는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특정채권자에 대한 대물변제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8다295103 판결 등 참조), 피고 C가 피고 B에 대하여 실제로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대물변제를 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만으로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 C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 C는 피고 B과 수 십 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서 피고 B이 주식회사 A을 운영하면서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피고 B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었다는 것인바, 피고 B의 재정 상태를 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C는 2020. 10. 29. 피고 B과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로받았는데, 같은 날 계약체결과 그에 따른 등기이전 등이 전부 완료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그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유 없다.

4.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 방법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는 전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경료된 각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 10. 29. 접수 제494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고, ② 별지 목록 제 2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20. 10.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는 B에게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2020. 10. 29. 접수 제297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임태혁, 판사 김민석, 판사 김다운

별지

부동산 목록

- 1. 전남 순천시 N 임야 3967㎡
- 2. 전남 광양시 O 임야 3305㎡. 끝.

1) 최초 보증금액은 416,000,000원, 보증기한은 2017. 4. 27.까지였으나, 2017. 4. 25., 2017. 10. 23., 2018. 10. 25., 2019. 10. 23., 2020. 10. 19. 5차례 보증조건이 변경되어 보증금액 379,200,000원, 보증기한 2021. 10. 22.까지로 각 변경되었다.

2) 대위변제증서(갑 제3호증)에 기재된 '2020년 2월 9.일'은 '2021년 2월 9.일'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